

제 5.46 호

1976.3.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

전 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○ 조 례

제 1024 호 : 서울특별시 공지 지구건축조례..... 3

○ 규 칙

제 1563 호 : 서울특별시임시직외사규정중 개정규정 4

○ 고 시

제 60 호 :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및 도로) 결정 및
지적승인..... 5

○ 공 고

제 68 호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
취소공고..... 6

○ 정 령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지지구 건축 조례를 이에 공 포함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1976년 3월 30일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024 호

서울특별시공지지구
건축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

제 33 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1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지구내에서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지구내에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.

- 1. 1종공지지구 : 600 평방미터
- 2. 2종공지지구 : 400 평방미터
- 3. 3종공지지구 : 330 평방미터

제 3 조 (건폐율)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(용적율)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. 1종 공지지구 : 40 퍼센트
- 2. 2종 공지지구 : 60 퍼센트
- 3. 3종 공지지구 : 80 퍼센트

제 5 조 (대지안의 공지)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내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표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다만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구 분	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(미터)	측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(미터)	후면대지경계선으로부터거리 (미터)
제 1종 공지지구	6	2	4
제 2종 공지지구	4	11.5	3
제 3종 공지지구	3	1	2

제 6 조 (기존건축물및대지) ① 공지지구의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공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것. (중건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) 에 대하여는 영 제 142 조 제 10 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에 동항의 규정중 " 2분의 1 " 을 " 5분의 1 " 로 한다.

② 공지지구의 지정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공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제 2 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것에 대하여는 영 제 142 조 제 1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제시행당시 중건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존건축물로서 이 조제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

" 별표 1 "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시적외사보수지급기준 보수지급기준

구분	직급별 인 턴	레 지 덴 트				평 의 사	
		1년생	2년생	3년생	4년생	1 호	2 호
월지금액	65,000	79,500	80,500	82,000	83,500	121,000	131,000

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임시적외사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

1976년 3월 30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563 호

서울특별시 임시적외사 규정중 개정 규정

서울특별시 임시적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0 조 제 2 항 다음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파견된 수련의 (인턴, 레지던트) 의 보수는 동 병원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.

구분	명 의 사			과 장				
	3 호	4 호	5 호	1 호	2 호	3 호	4 호	5 호
월지급액	141,000	151,000	161,000	175,000	175,000	185,000	195,000	205,000

부 칙
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 및 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 및 도로) 을 다음과 같이

가. 전기공급 설비조서

결정 (신설및 변경) 및 지적승인 하였
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3
조와 대공령명 제 7753 호 (75.5.22)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
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3. 24

서울특별시 장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 정	전기공급설비	영등포구온수동 산 17 일대	12,833	
변 경	"	"	17,560	증 4,727㎡
신 설	"	성동구광장동 산 81-14 일대	20,444	
신 설	"	강남구개포동 산 142 일대	23,838	

나. 도로변경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로	3	6m	45m	영등포구온수동 45-1	영등포구온수동 45-1	위치, 폭원
변 경	"	2	8m	85m	"	"	45-9 연장변경

※ 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8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
업체지정및취소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
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

3조,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
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
생산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
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6. 3.

서울특별시 장

1. 지정 업체
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6년도수출 목표액
429	조부라더스창에사	조기철	성수동2가 284-12	나무구슬핸드백,벨트	\$ 70,000
1529	유일보은병(주)	이창복	화곡동 323-16	보 은 병	\$ 50,000

2. 지정취소업체
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취소사유
102	삼원통상(주)	서영일	종로5가 255-13	가 발	소재 불명
103	동 아 사	김선두	종로인사동 58-1	세타 봉제품	"
105	(주)왕 능 사	이수한	종로5가 256	피혁제품	"
106	수 립 원	한상수	종로 전지동 49	수 예 품	보고불이행
426	삼협유직공업사	이종혁	성동하왕십리 339-47	고 무 테 프	소재 불명
442	협진출산(주)	김관형	성동성수동2가314	가 발	"
469	대영상사(주)	이춘복	" 324-1	바 스 켓	"
474	대원화성(주)	강수창	" 27	합성수지	"
487	이화섬유(주)	서백준	" 19-15	세 - 타	"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정 정</div>		호 및 제 1561 호에 아래와 같은 오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. 1976. 3. 30 서울특별시
시보제 544 호 (1976.3.19) 에 게재 된 서울특별시규칙제 1559 호, 제 1560 호 서울특별시 규칙제 1559 호 (서울특별시립운동장적제중 개정규칙)		
해 당 사 항	오	정
계 목	서울특별시립운동장적제중 개정규칙 (안)	서울특별시립운동장적제중 개정규칙
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마목중	부속시설 (시당, 점포, 매점)	부속시설 (석당, 점포, 매점)
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중	개량및위생, 하수도 보수의 계획	개량 및 위생, 상·하수도 보수의 계획
서울특별시 규칙제 1560 호 (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규칙)		
해 당 사 항	오	정
계 목	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(안)	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
서울특별시 규칙제 1561 호 (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)		
해 당 사 항	오	정
부칙제 2 항중	서울특별시 규칙제 1326 호 시행일로 부터	이규칙 시행일로 부터